

DJ 더주는 법인 파킹통장 특약

제1조 (약관의 적용)

DJ 더주는 법인 파킹통장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 및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이 예금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(예금과목)

이 예금은 보통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(가입대상)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실명의 법인으로 합니다.

단, 비대면채널 가입 가능한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4~5번째 자리가 81, 86, 87, 88인 영리법인으로, 외국법인 및 지사는 제외하며,

대표자가 최대주주 겸 내국인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단독대표자이어야 합니다.

제4조 (가입제한)

이 예금의 가입은 제한 없습니다.

제5조 (가입금액 및 저축기간)

이 예금의 가입금액 및 저축기간은 제한 없습니다.

제6조 (이자율적용)

이 예금은 매일의 최종 예금잔액이 해당하는 금액구간에 따라 영업점 또는 제주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액구간별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, 금액구간 및 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7조 (우대 이자율)

이 예금의 우대이자율은 아래의 금액구간별 우대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예금구분	금액구간	우대이자율
보통예금	5천만원 이하	2.00%
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.50%
	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0.90%
	5억원 초과	0.49%

제8조 (우대서비스)

이 예금의 가입자에 대한 우대 서비스(이하 '서비스'라 한다), 우대 기간, 우대 혜택은

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
가. 이 서비스의 기간은 이 예금의 가입시점부터 이 예금의 해지시점까지 입니다.

나. 이 서비스의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동 내용 변경시 변경 사항 등 관련 내용을 은행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.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은 '예금거래기본약관 제22조 제2항'을 적용합니다.

다. 이 예금의 우대혜택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
(1)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 :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폰뱅킹을 통한 당행 및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

(2) 자동화기기(CD/ATM기 수수료)

- 제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및 이체수수료 : 면제

- 다른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및 이체수수료 : 면제

※ 다른 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임(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다른은행 제휴 CD기 및 한컴/효성/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제외)

제9조 (이자지급방식)

이 예금의 이자는 이자계산기준일인 매월 네번째 토요일에 지급합니다.

제10조 (양도 및 담보제공)

이 예금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가 가능하며, 담보제공은 불가능합니다.

제11조 (연계·제휴 서비스)

① 이 예금의 연계·제휴 서비스는 “ERP 사용자 대상, 데이터 기반 ERP뱅킹 수신 서비스”를 가입하여 「DJ 더주는 법인 파킹통장」을 개설한 경우, 제휴사가 제공합니다. 단, “ERP뱅킹 수신 서비스” 해지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휴사명	서비스 명칭	제휴 서비스 내용
(주)더존비즈온	ERP 사용자 대상, 데이터 기반 ERP뱅킹 수신 서비스	1. ERP뱅킹 수신 서비스 페이지 내 이 예금의 이자,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2. ERP뱅킹 수신 서비스 페이지 내 이 예금의 이체지시(이체요청정보) 전달

② 연계·제휴 서비스 이행 책임

(주)제주은행은 연계·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

(단, 연계·제휴서비스가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연계·제휴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제외)를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연계·제휴서비스를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·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

③ 연계·제휴 서비스 제공 기간

“ERP뱅킹 수신 서비스”를 통해 「DJ 더주는 법인 파킹통장」을 개설하여 이용시에만 제공합니다. 단,

제휴사와 (주)제주은행의 계약기간 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(연장기간 포함) 내에 한합니다.

④ 연계·제휴 서비스 제공 요건

제휴사 앞 금융거래정보 이용·제공 동의를 하고 “ERP뱅킹 수신 서비스”를 제공합니다.

⑤ 연계·제휴 서비스 변경 내용 사전 통지 방법

연계·제휴 서비스를 축소·변경한다는 사실을 서면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(LMS 등)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·변경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합니다. 단,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 또는 연계·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일방적인 중단 등 6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고지합니다.

제12조 (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 사항)_DJ Bank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함

① ERP뱅킹 “비대면 계좌개설”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

선정된 (주)더존비즈온과 (주)제주은행이 시험 운영하여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1.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(지정만료일 : 2028년 7월 12일_서비스 출시 후 2년)
2.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, 중지명령(변경결정)을 하는 경우
3. (주)더존비즈온이나 (주)제주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
4.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

- ② 전항에 따라 “비대면 계좌개설”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(주)제주은행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해야합니다. 다만,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,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③ “비대면 계좌개설”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시험운영하는 서비스이며,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에게 통장개설 전 “혁신금융서비스 고지사항”을 안내하고, 이용자는 동 내용에 대해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조치는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④ (주)더존비즈온과 (주)제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(주)더존비즈온과 (주)제주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, 전자금융거래법,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.

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1. 이 제정 특약은 2026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.
2. 이 개정 특약은 2026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
3. 이 개정 특약은 2026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.
4. 이 개정 특약은 2026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.